**定 款**

株式會社 信 元

**목 차**

1. 총 칙 ‥‥‥‥‥‥‥‥‥‥‥‥‥‥‥‥‥‥‥‥‥‥‥‥‥‥‥‥ 1

제1조 (상 호) ‥‥‥‥‥‥‥‥‥‥‥‥‥‥‥‥‥‥‥‥‥‥‥‥‥‥‥1

제2조 (목 적) ‥‥‥‥‥‥‥‥‥‥‥‥‥‥‥‥‥‥‥‥‥‥‥‥‥‥‥1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2

제4조 (공고방법) ‥‥‥‥‥‥‥‥‥‥‥‥‥‥‥‥‥‥‥‥‥‥‥‥‥‥‥2

1. 주 식‥‥‥‥‥‥‥‥‥‥‥‥‥‥‥‥‥‥‥‥‥‥‥‥‥‥‥‥‥ 3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3

제6조 (일주의 금액) ‥‥‥‥‥‥‥‥‥‥‥‥‥‥‥‥‥‥‥‥‥‥‥‥‥ 3

제7조 (주식의 종류) ‥‥‥‥‥‥‥‥‥‥‥‥‥‥‥‥‥‥‥‥‥‥‥‥‥ 3

제7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3

제8조 (주권의 종류) ‥‥‥‥‥‥‥‥‥‥‥‥‥‥‥‥‥‥‥‥‥‥‥‥‥ 4

제9조 (신주인수권) ‥‥‥‥‥‥‥‥‥‥‥‥‥‥‥‥‥‥‥‥‥‥‥‥‥‥ 4

제9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5

제9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5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 6

제11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6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7

1. 사 채‥‥‥‥‥‥‥‥‥‥‥‥‥‥‥‥‥‥‥‥‥‥‥‥‥‥‥‥‥ 8

제13조 (사채의 발행) ‥‥‥‥‥‥‥‥‥‥‥‥‥‥‥‥‥‥‥‥‥‥‥8

제13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8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9

1. 주주총회‥‥‥‥‥‥‥‥‥‥‥‥‥‥‥‥‥‥‥‥‥‥‥‥‥‥‥‥‥10

제16조 (소집시기) ‥‥‥‥‥‥‥‥‥‥‥‥‥‥‥‥‥‥‥‥‥‥‥‥‥‥ 10

제17조 (소집권자) ‥‥‥‥‥‥‥‥‥‥‥‥‥‥‥‥‥‥‥‥‥‥‥‥‥‥ 10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 10

제19조 (소 집 지) ‥‥‥‥‥‥‥‥‥‥‥‥‥‥‥‥‥‥‥‥‥‥‥‥‥‥ 10

제20조 (의 장) ‥‥‥‥‥‥‥‥‥‥‥‥‥‥‥‥‥‥‥‥‥‥‥‥‥‥11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1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11

제2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1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11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2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2

제26조의 2(서면에의한 의결권의 행사) ‥‥‥‥‥‥‥‥‥‥‥‥‥‥12

제2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12

1. 이사,이사회‥‥‥‥‥‥‥‥‥‥‥‥‥‥‥‥‥‥‥‥‥‥‥‥‥‥‥ 13

제28조 (이사의 수) ‥‥‥‥‥‥‥‥‥‥‥‥‥‥‥‥‥‥‥‥‥‥‥‥‥‥13

제29조 (이사의 선임) ‥‥‥‥‥‥‥‥‥‥‥‥‥‥‥‥‥‥‥‥‥‥‥‥‥13

제30조 (이사의 임기) ‥‥‥‥‥‥‥‥‥‥‥‥‥‥‥‥‥‥‥‥‥‥‥‥ 13

제31조 (이사의 보선) ‥‥‥‥‥‥‥‥‥‥‥‥‥‥‥‥‥‥‥‥‥‥‥‥‥13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14

제33조 (이사의 직무) ‥‥‥‥‥‥‥‥‥‥‥‥‥‥‥‥‥‥‥‥‥‥‥‥‥14

제34조 (이사의 보고의무) ‥‥‥‥‥‥‥‥‥‥‥‥‥‥‥‥‥‥‥‥‥‥‥14

제34조의 2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4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15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5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15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15

제39조 (상담역 및 고문) ‥‥‥‥‥‥‥‥‥‥‥‥‥‥‥‥‥‥‥‥‥‥‥ 16

1. 감 사‥‥‥‥‥‥‥‥‥‥‥‥‥‥‥‥‥‥‥‥‥‥‥‥‥‥‥‥‥17

제40조 (감사의 수와 선임) ‥‥‥‥‥‥‥‥‥‥‥‥‥‥‥‥‥‥‥‥‥‥ 17

제40조의 2 (감사의 임기) ‥‥‥‥‥‥‥‥‥‥‥‥‥‥‥‥‥‥‥‥‥‥‥17

제40조의 3 (감사의 보선) ‥‥‥‥‥‥‥‥‥‥‥‥‥‥‥‥‥‥‥‥‥‥‥17

제40조의 4 (감사의 직무) ‥‥‥‥‥‥‥‥‥‥‥‥‥‥‥‥‥‥‥‥‥‥‥17

제40조의 5 (감사의 감사록) ‥‥‥‥‥‥‥‥‥‥‥‥‥‥‥‥‥‥‥‥‥ 18

제40조의 6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18

1. 계 산‥‥‥‥‥‥‥‥‥‥‥‥‥‥‥‥‥‥‥‥‥‥‥‥‥‥‥‥‥19

제41조 (사업년도) ‥‥‥‥‥‥‥‥‥‥‥‥‥‥‥‥‥‥‥‥‥‥‥‥‥‥ 19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19

제42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19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20

제44조 (이익배당) ‥‥‥‥‥‥‥‥‥‥‥‥‥‥‥‥‥‥‥‥‥‥‥‥‥‥ 20

제45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0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신원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 Won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입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섬유의류 판매업

4.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

5. 신발류, 고무제품, 목재제품 기타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6. 인쇄업

7. 여행업

8. 관광숙박업

9. 관광객이용 숙박업

10. 국제회의 용역업

11. 관광편의 시설업

12. 전자부품 제조업

13. 전자제품 제조업

14. 자동차부품 제조업

15. 주택건설업

16. 건축자재 판매업

17. 토목 건축업

18. 전기 공사업

19. 신용카드업

20. 제조업

21. 위탁매매 및 대리업

22. 광업 및 수산업

23. 발효식품 및 산,알칼리업

24. 물품매매 및 제조가공업

25. 사료공업

26.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화장품, 의료용구의 수입제조 가공판매업

27. 주차장영업(노선버스 및 화물용 트럭은 제외)

28. 주택신축판매업

29. 귀금속제조 판매업

30. 통신판매업

31. 자동차판매,정비,대여,재생사업

32. 자동차부품 판매업

33. 백화점 경영업

34. 화학공업기계 공구장치 제작판매업

35. 창고업

36. 체육장(테니스장 및 기타) 영업

37. 유독물 제조 판매업

38. 염료,안료 및 그 중간체 제조 판매업

39. 비료 생산 및 판매업

40. 호텔업

41. 의류,완구류 제조 판매업

42. 식품(청량음료, 보존음료,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포함)

   식품첨가물,인삼제품의 수입 제조 가공 판매업

43. 인터넷 사업

44. 통신서비스업

45. 통신장비 판매업

46.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w.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에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삭제)**

**제 12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와 발행조건, 상환기간 등을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정관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500원으로 할 수 있다.

**제 14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정관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500원으로 할 수 있다.

**제 14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5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6 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7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소 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의  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을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는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2 (삭 제)**

**제 27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8 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단, 이사회는 전체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9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0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1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3 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 2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36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7 조의 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사외이사평가위원회

3. 경영위원회

4. 내부거래심의위원회

5. 보상위원회

6. ESG위원회

7. 기타 법령 등에 의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제 40 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인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수의 수는 합산한다.

**제 40조의 2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제 40조의 3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의 4(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0 조의 5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6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1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대차대조표

나.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조 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 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4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5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2000년 3월 24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년 3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년 3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3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3월 20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36기 정기주주총회(2009.03.20)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 + 1% 추가 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2012년 3월 30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39기 정기주주총회(2012.03.30)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 + 1% 추가 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2013년 3월 29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40기 정기주주총회(2013.03.29)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3월 29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46기 정기주주총회(2019.03.29)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및 제15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9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우선주식의 특례)

정관 제7조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1996년10월1일) 이전에 발행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주식의 의결권이 부활된다. 동우선주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2022년 3월 25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49기 정기주주총회(2022.03.25)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